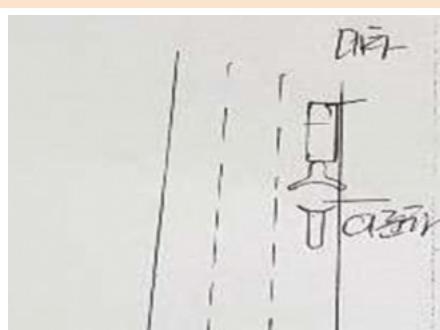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이륜차 추돌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추돌	피추돌	참고기준 39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900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p>•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지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90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 주장 내용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청구차량의 후미를 피청구 차량(이륜차)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정차하는 청구차 랑을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하는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 갑자기 정차하여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후미추돌사고이지만, 청구차량의 이유 없 는 급정거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택시정류장이 아닌 곳으로 확인됨)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이륜차가 선행하던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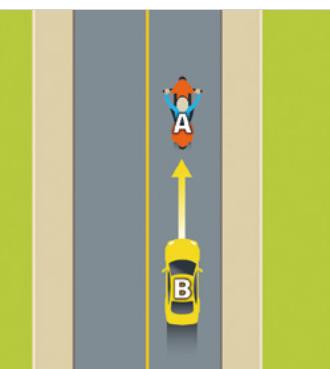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택시차량인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지하면서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 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택시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급정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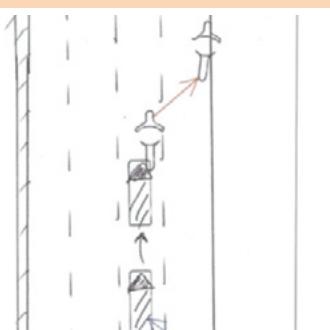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사고 전 청구차량은 택시정류장이 아닌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4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지하였던 점, 사고시간은 주간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0은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이륜차가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함
- 본 사례는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0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정류장이 아닌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4차로에서 급정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대이륜차 추돌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피추돌	추돌	참고기준 39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55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선행 직진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1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3차로를 직진 중 동일 차로에서 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진행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상 직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p> <p>•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p>□ 현장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차량 3차선 정상 죄 진중,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3 차선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 (이륜차) 추돌한 현장 확인 => [redacted] -> [redacted] 향 <자동차 전용도로 확인> 	
<p>• 사고 현장사진(사고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임) • 경찰서 통지서(피청구차량(이륜차)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됨)</p>	<p>• 동영상(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는 모습) • 동영상(후행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p>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및 음주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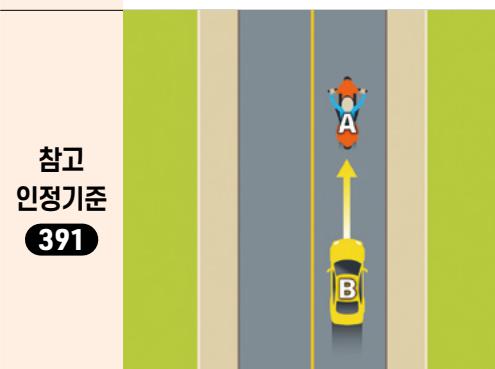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피청구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돌한 사고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가 이륜차의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인 점, 피청구차량의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1은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피추돌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한 점, 피청구차량의 운전자가 주취상태(면허취소 수치 초과)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대이륜차 자동차 추돌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피추돌	추돌	참고기준 39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130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2차로를 직진하다가 사고 발생 전 우회전을 하여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1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오른쪽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음주상태(0.08%)로 우회전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4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 운전자의 음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기해차량의 판단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는 모습)
 - 동영상(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첨구차량의 노면표시 위반 및 음주 여부

결정 구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감속을 하는 상태였고, 피청구차량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의 후미추돌사고이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중 우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후행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우회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충격부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91은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피추돌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위해서 감속하였던 점, 피청 구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직진 대 유턴 사고 (B신호유턴) (기본과실)				참고기준 392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527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유턴 신호에 유턴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2(나)	<p>(나)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도표 254를 그대로 준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피청구차량(이륜 차)이 신호위반하여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유턴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비록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7-000000호
성명	□ 거주자 ■ 비거주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번호] 01043	
운전면허 종별-제1종 보유증 면호:		
사고처장 차종-승용차 번호: 63-XXXXXX [소유자: 000000]		
발생일시 2017.04.19 23:1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고지 위치		
피해내용	이륜 차량 0, 부상 3 명, 충돌: 통상상 사고는 1차정도 진정 후 유턴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운전자는 유턴신호에 유턴 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및 손상상태)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및 손상상태)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2의(나)는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 이륜차는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도표 254의 (나)를 준용하여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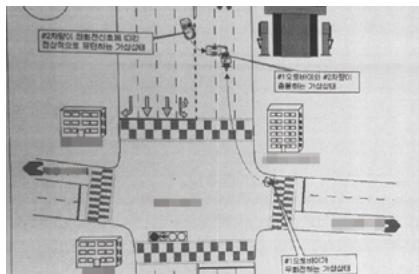
(나) 우회전 대 유턴 사고 (B신호유턴) (수정과실)				참고기준 392-1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10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5 : 3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2-1(나)	<p>(나) 도표 254-1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게 보아 양측의 기본과실률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유턴 중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 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까지 대우회전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p>피청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 완료 후 직진 중 반대방향에서 유턴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우회전 완료 후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유턴하는 청구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 과실비율은 동등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2016-0000000000000000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주인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	종별: 제2종 보통	면호:	
사고지점	차종: 이륜차	번호: [redacted] (소유자: [redacted])	
발생일시	2016.11.15 (금) 21:5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동인	운전운전 우우우우		
희생내용	인상: 사망 0, 부상 3 명, 물해: 0 원 상당		
※ 1 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진출에 따라 충돌적으로 위험하던 2 차량을 학행으로 충돌한 고정사고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 중 우회전 후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함

-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유턴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장소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 후 직진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반대방향에서 우회전 완료 후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대우회전을 완료한 이후 2차로를 직진 중인 상태에서 청구차량과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 완료 후 진행하여 오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대우회전을 완료한 이후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차량의 충돌 부위, 기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사진에 나타난 사고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2-1의 (나)는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우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54-1의 (나)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유턴신호에 유턴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2-1의 (나)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대우회전을 완료한 이후 직진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5% ● 피청구차량 65%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후행 유턴 대 선행 유턴 (동시유턴) (수정과실)				참고기준 393-2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425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륜차]이 후행상태에서 유턴하던 중 선행 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이후 피청구차량이 심의외 차량을 재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3-2(나)	<p>(나) 도표 25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 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 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행 청구차량[이륜차]이 유턴 중 선행 피청구차량이 급 유턴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다소 먼저 유턴 시도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한 과실이 있으나, 피청구차량도 당황하여 운전조작 미숙 으로 심의외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이륜차] 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하던 중 후방에서 역주행 하는 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 후 교차로 내에서 심의외 차량과 재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역주행한 청구차량[이륜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이륜차]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파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파청구차량의 손상 사진(2차 충돌 후 전면부 손상)
 - 동영상(후행하는 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유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과 후행 이륜차가 유턴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과잉 피양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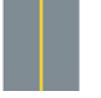
결정 그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과 후행 청구차량[이륜차]이 유턴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1차 충격에 놀라 담황한 사실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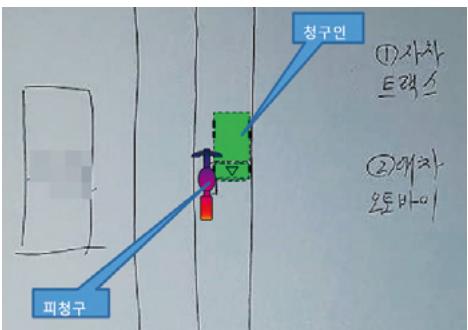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륜차]이 후행 유턴 중 선행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도어를 충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청구 차량이 직진하여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심의외 차량을 재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통행방법 위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이나, 피청구차량의 과잉 피양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3-2의 (나)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과 후행 이륜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54-2 (나)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후행 유턴 이륜차의 기본과 실비율을 70%, 선행 유턴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에서는 동일차로에서 후행 청구차량[이륜차]과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93-2의 (나)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의 과잉 피양을 인정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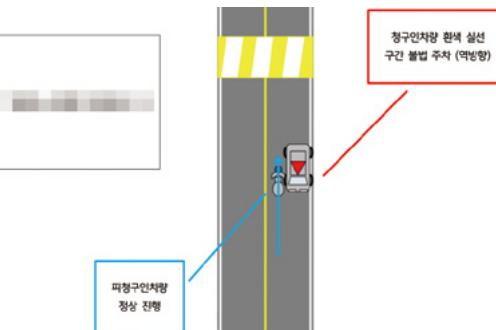
추돌사고 (주·정차 중)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추돌	 주·정차	참고기준 39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3756	결정비율
사고내용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참고 인정기준 394		<p>추돌사고인 도표 390, 391와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 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 주차 중인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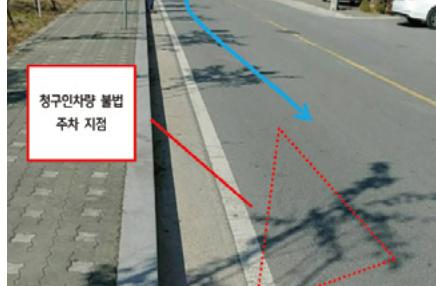
• 청구차량은 주차가 허용되는 흰색 실선 구간에 주차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피청구인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편도 1차로를 정상 진행 중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사고 시간이 심야시간이었던 점, 청구차량의 불법주차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손상 모습) 사고현장 사진(흰색 실선 구간에 주차한 청구차량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흰색실선구간인 사고 장소의 모습)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주(정)차된 차량을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흰색 실선구간에 주차된 청구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주차한 갓길은 흰색실선이 있는 곳인 점,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운전자가 0.1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4는 동일방향에서 주(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사고인 도표 390, 도표 391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하므로, 추돌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주(정)차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흰색 실선구간에 주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열린 문 접촉사고 (B좌측 문 열림)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차		좌(우)측 문 열림	참고기준 395 (가)
------------------------------------	--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90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운전석 뒷문을 개문하다가 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5(가)	<p>(가) 후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는 매우 곤란하나, 평소 개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 간 열린 문 접촉사고인 도표 248과 동일하게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 후 운전석 뒷도어를 여는 과정에서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p>• 청구차량이 횡단보도의 갓길에 정차 중 운전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하면서, 원쪽방향으로 개문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정차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사고현장 사진(횡단보도 부근 도로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도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 정차 중이던 차량이 왼쪽으로 개문하면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운전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후행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운전석 뒷문을 개문하다가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주위 상가에 불이 켜진 대로라는 점에서 야간인 점 등은 별도의 과실비율을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5의 (가)는 정차 중인 차량이 왼쪽 문을 열면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후행하는 이륜차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는 매우 곤란하나, 평소 개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8과 동일하게 좌측 개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후행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운전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5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열린 문 접촉사고 (B우측 문 열림) (기본과실)					참고기준 395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1811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편도 4차로의 4차로에 정차 후 조수석 뒷문을 개문하다가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95(나)	<p>(나)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정차 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우측문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중인 B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좌측문보다는 우측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A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 정차 후 동승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리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으로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p> <p>• 도표 395의 (나)를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륜차)이 후행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조수석 뒷문 손상)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이 정차 후 오른쪽 문을 열면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 정차 후 오른쪽 문을 열면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정차 후 동승자 하차를 위해 뒷문을 개문하던 중 후방에서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5의 (나)는 정차 중인 차량이 오른쪽 문을 열면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395의 (가)와 달리,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왼쪽 문보다는 오른쪽 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오른쪽 개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후행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조수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5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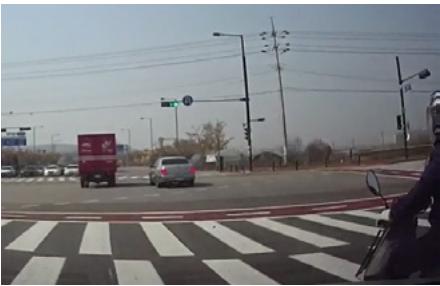
(가)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A좌회전) (기본과실)				참고기준 398-1 (가)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389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8-1(가)		<p>(가) 좌회전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중인 상대 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직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중 왼쪽 도로에서 진행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인정하나, 청구차량의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증사고 점수번호	경찰서 제2010-000
성명	<input type="checkbox"/> 차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운전자 <input type="checkbox"/> 차주와 차운전자	주인증명번호	
주소		(본점번호: 010)	
운전면허	종별: 제2종 보통	번호: 경기 95-	
사고처	차종: 승용차	번호: [redacted]	(소유자: [redacted])
발생일시	2018.04.20 15:1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진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감로변경 위반		
피해내용	인화: 사망 0, 무상 0 명 물화: 0 명 상상: 0 명		
사고개요	#1)이륜차의 속도 부여과 #2)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이 충돌한 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면서 좌회전한 점, 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이 보이기는 하나 거리상 청구차량이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8-1의 (가)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8-1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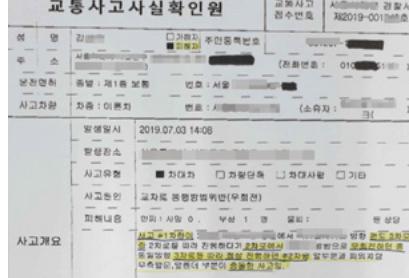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B추월 우회전) (기본과실)					참고기준 398-2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7484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중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98-2(나)	<p>(나) 추월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 기본과실을 100으로 본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우회전 진입 청구인 차량</p>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불상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3차로에서 직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였고, 청구차량은 노면표시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사고원인으로 기재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음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와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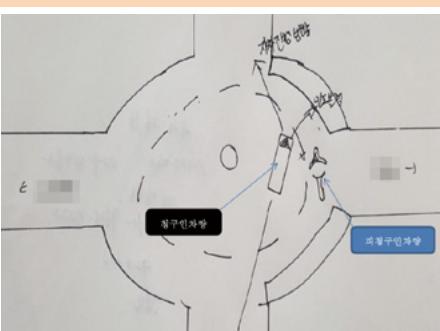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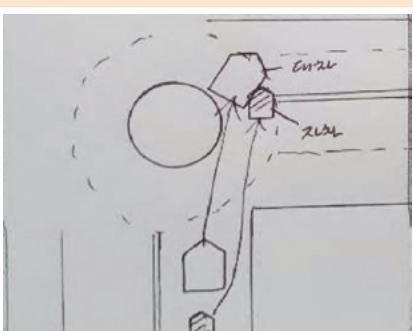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중 오른쪽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점, 피청구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 도표 398-2의 (나)는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직진차로에서 추월형태로 우회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청구차량이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8-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회전2차로 회전 대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A회전(회전2차로), B진로변경(회전1→2차로))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회전교차로	회전(회전2차로)	진로변경 (회전1→2차로)	참고기준 399-1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552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이던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9-1(가)	 <p>(가) 도표 263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선행하여 주행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청구차량의 추월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회전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오른쪽으로 급조향하는 청구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임)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회전 중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오른쪽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1차로를 벗어나 2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경위 및 충돌 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9-1의 (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63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2차로에서 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9-1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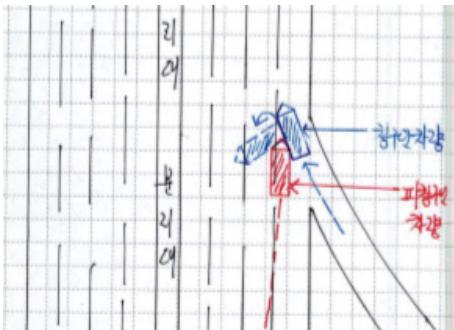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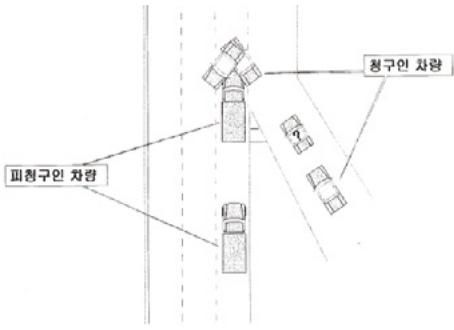
고속도로 합류도로 사고

합류도로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50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839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다가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1	 <p>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합류 중 고속도로의 본선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오른 쪽 합류도로에서 합류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급진입하다가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해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도로로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본선도로로 진입 중 본선도로의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본선도로와 합류도로의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차로에서 본선차로로 합류하다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1은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본선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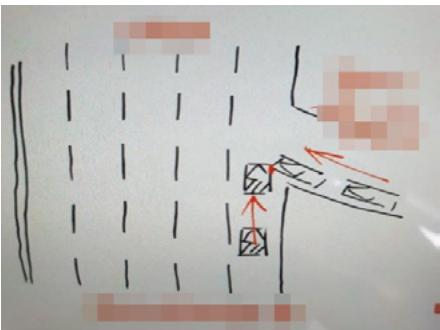
고속도로 합류도로 사고

합류도로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501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598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정체구간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다가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1	 <p>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려다가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 본선도로의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정차 후 급출발하면서 정지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정지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급출발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청구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정체구간에서 본선도로로 진입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1)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충격 부위)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2)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정체구간에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합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장소는 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정체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은 합류하는 청구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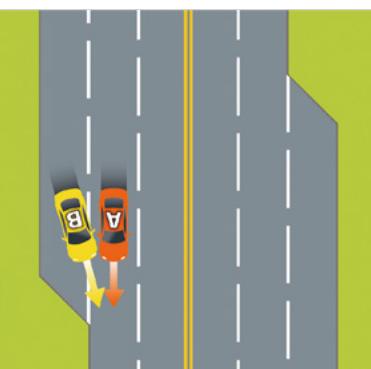
결정 이유

-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청구차량이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합류 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청구차량 또한 차량 정체 중인 합류도로에서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청구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청구차량이 다른 정체차량으로 인하여 차로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1은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본선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도표 50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들의 정체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합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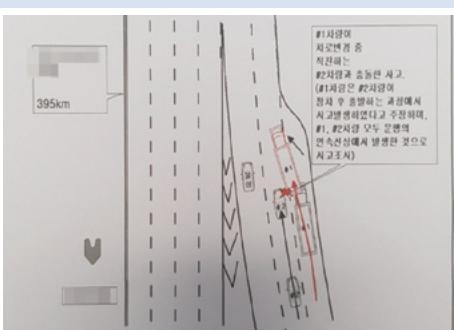
고속도로 차로 감소도로 사고

차로 감소도로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고속도로	본선차	합류차	참고기준 502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40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2	 <p>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서행 직진 중이었고,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류구간에서 피청구차량이 합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합류 중 청구차량이 갑자기 직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양 차량 과실은 동등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본선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 합류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차로감소 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차로감소 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 중 합류차로에서 합류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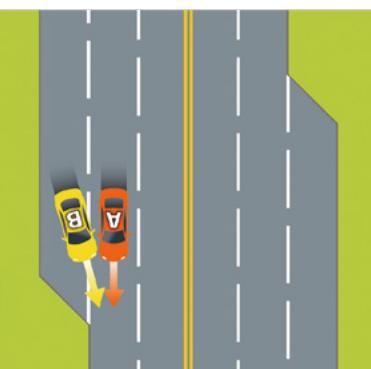
결정 이유

- 고속도로의 차로감소구간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합류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합류시도를 미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은 차로 감소구간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2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시 주의의무)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고속도로의 차로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합류차로에서 합류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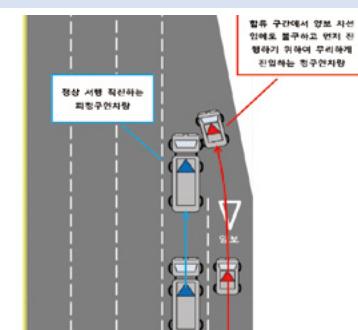
고속도로 차로 감소도로 사고

차로 감소도로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50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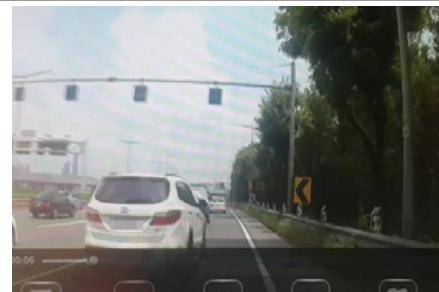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516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보표시가 있는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2	 <p>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합류하면서 4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이미 합류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장소는 5차로가 사라지는 합류구간으로, 청구차량이 합류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4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류를 하던 중 정상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부적절한 합류방법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차로 감소 구간을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진행한 합류차로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음)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 피청구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차로감소 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합류차로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 의하면,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하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진행하던 합류차로의 노면에는 양보표시가 있음

결정 이유

-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를 하다가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진행한 합류차로의 노면에는 양보표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2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시 주의의무)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2를 적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진행한 차로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고속도로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추월차로 진로변경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50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013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인 1차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3	<p>추월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추월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B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므로 B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한 시점에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 등에서 진로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동 영상을 보면,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선행한 상태에서 진로변경한 점, 양 차량 충격 부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3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상 추월차로(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차로(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추월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여,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추월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직진 중 추월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고속도로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추월차로 진로변경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503
	신호등 없음	고속도로	추월차로 진행	주행차로에서 추월 차로로 진로변경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494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3	<p>추월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추월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B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므로 B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추월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왼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로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차량의 부적절한 제동으로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진로변경을 시작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선행 피청구차량의 추월차로 진입 정도와 충격부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인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여, 피청구차량의 뒷부분이 충격되었음

결정 이유

-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를 직진 중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상당거리 이전부터 진로변경신호를 하면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3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상 추월차로(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차로(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추월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여,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추월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를 직진 중 추월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고속도로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주행차로 진로변경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없음	고속도로	후행직진	주행차로로 진로변경

504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563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주행차로인 4차로로 진로변경 중 4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4	<p>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의 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인 A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에서 4차로로 서행하여 진로변경 중 피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정체구간에서 서행으로 진로변경한 점, 후행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직진한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4차로를 정상 진행 중 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의 실선구간에서 4차로로 급진로변경 하여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4차로로 뛰어들며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는 청구인 차량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를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 중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에서 주행차로를 직진 중인 차량이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에서 주행차로인 4차로로 진로변경 중 4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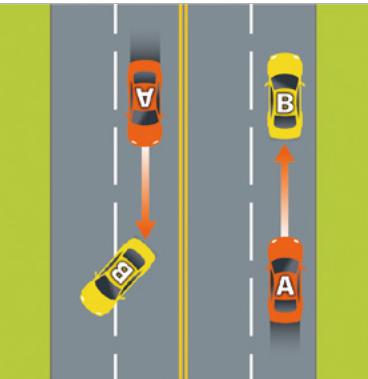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후행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속도를 감안할 때 피청구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4는 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 방법)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진로변경한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주행차로로 진로변경 중 주행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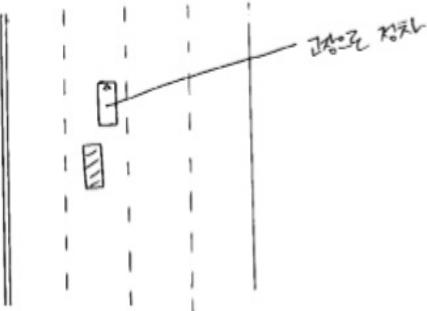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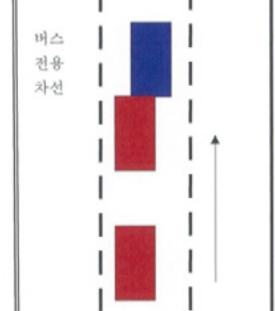
고속도로 추돌 사고

추돌사고 (차로 주·정차 중) (기본과실)		고속도로		참고기준
		고속도로		505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595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5	 <p>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량이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표 245에 비하여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높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의 2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청구차량을 2차로를 주행하는 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후방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고장 표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대만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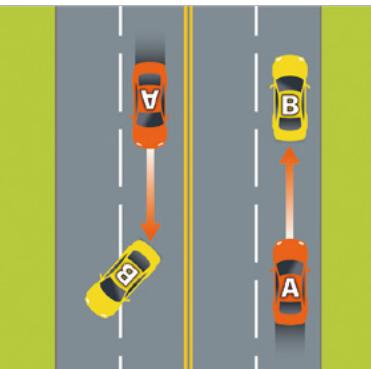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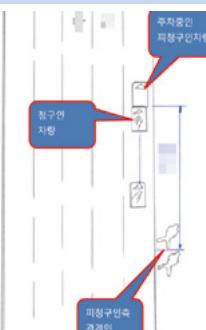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없이 2차로에 정차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5는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선행차량이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주·정차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 245에 비하여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높여,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주·정차 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피청구차량 40%

고속도로 추돌 사고

추돌사고 (차로 주·정차 중) (수정과실)					참고기준 50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820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선행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던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5	 <p>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량이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표 245에 비하여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높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에 외곽고속순환도로의 5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정차 이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승자가 손만 흔들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청구차량은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우측 간길에 정차 중 간길을 주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비상등을 점멸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과 오른쪽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동승자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충격부위)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야간에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의 안전조치 정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시야가 제한된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야간에 피청구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었고, 비상점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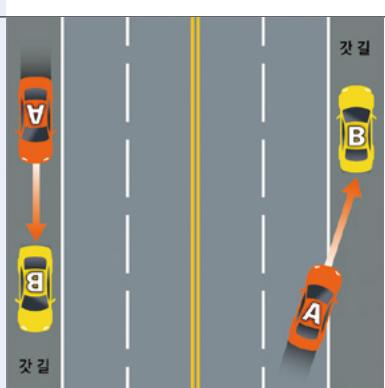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야간에 외관순환고속도로의 끝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만 점등하고 후방 안전조치 없이 정차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의 안전조치의 정도(비상등 점등, 후방에서 수신호)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5는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선행차량이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주·정차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 245에 비하여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높여,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주·정차 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5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사고 시간이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이기는 하나, 피청구차량은 비상등을 점멸한 상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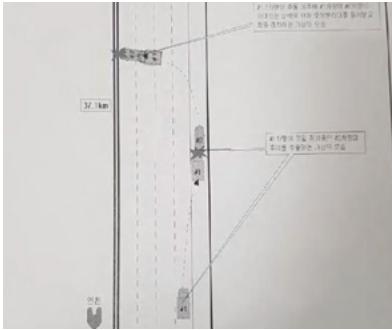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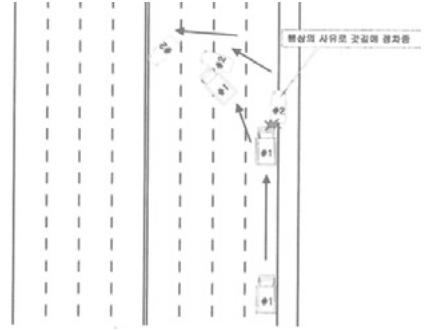
고속도로 추돌 사고

추돌사고 (갓길 주·정차 중) (기본과실)				참고기준
				506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36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6	 <p>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피추돌차량이 사고에 관한 예전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운전자는 몸이 불편하여 청구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고,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출음운전을 하여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주행 중 4차로와 갓길을 점유하며 정차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갓길과 4차로를 점유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점수번호	제 2016-002-호
성명	■[Redacted] ■[Redacted]	고객에게 주고받은 번호 고객이	
주소	[Redacted]		
운전면허			
사기처벌	처벌: [Redacted]	번호: [Redacted]	승인일: [Redacted]
별첨증명서	2016.06.15 08:40		
별첨증명서	[Redacted]		
사기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치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기증명서	인정증명서여부: [Redacted]		
피해내용	인정: 사고: 0	부상: 1	상해: 0
사고개요	부모님을 사고		



- 동영상(후행 피청구차량이 갓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후미축돌 사고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접촉 부위)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간길에 주·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주행차로에 선행하던 차량이 없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갓길로 진행한 점, 청구차량의 운전자는 몸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우측 갓길로 정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6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갓길에 정차한 피추돌차량에게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갓길에 주·정차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부득이한 사유로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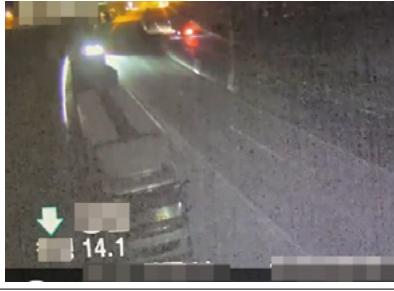
고속도로 추돌 사고

추돌사고 (갓길 주·정차 중)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고속도로	추돌	피추돌 (갓길 주정차중)	참고기준 506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376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며 주차 중 3차로를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6	<p>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피추돌차량이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의 3차로를 진행 중 갓길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야간에 줄음쉼터부근의 갓길에서 차로를 일부 점유하며, 차량의 통행을 절대적으로 방해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 중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과속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right;">고속도로 제2019-001111호</th></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설명</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설명내용]</td></tr> <tr> <td>주소</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주소]</td></tr> <tr> <td>출전현황</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출전현황]</td></tr> <tr> <td>사고차량</td><td>차종: 승용차</td><td style="text-align: right;">번호: [번호]</td></tr> <tr> <td></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소유자: [소유자])</td></tr> <tr> <td>발생일시</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2019.01.25 02:43</td></tr> <tr> <td>발생장소</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발생장소]</td></tr> <tr> <td>사고유형</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충돌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증인</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증인]</td></tr> <tr> <td>피해내용</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피해내용]</td></tr> <tr> <td>사고개요</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사고개요]</td></tr> <tr> <td>사고내용</td><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사고내용]</td></tr> </tbody>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속도로 제2019-001111호	설명	[설명내용]		주소	[주소]		출전현황	[출전현황]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번호]		(소유자: [소유자])		발생일시	2019.01.25 02:43		발생장소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충돌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인	[증인]		피해내용	[피해내용]		사고개요	[사고개요]		사고내용	[사고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속도로 제2019-001111호																																						
설명	[설명내용]																																							
주소	[주소]																																							
출전현황	[출전현황]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번호]																																						
	(소유자: [소유자])																																							
발생일시	2019.01.25 02:43																																							
발생장소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충돌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량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인	[증인]																																							
피해내용	[피해내용]																																							
사고개요	[사고개요]																																							
사고내용	[사고내용]																																							
 <p>25.01.2019 AM 2:37:45</p>	 <p>25.01.2019 AM 2:37: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3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갓길에 주차한 피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3차로를 일부 점유하며 주차중인 피청구차량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추돌 사고로 기재됨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야간에 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주차 중이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갓길에 주차 중 3차로에서 후행 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3차로를 일부 점유한 상태에서 주차 중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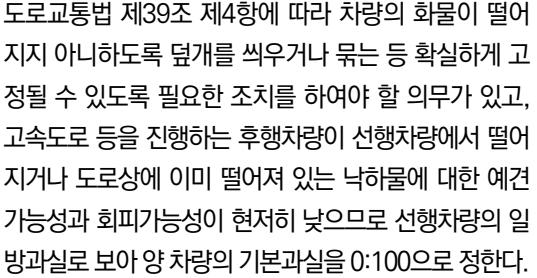
결정 이유

- CCTV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야간에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 중인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과속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3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 중이었던 점, 청구차량의 선행차량들은 피청구차량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주행한 점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6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 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갓길에 정차한 피추돌차량에게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갓길에 주·정차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차 중 3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며 주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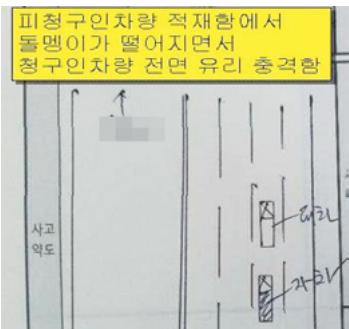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낙하물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508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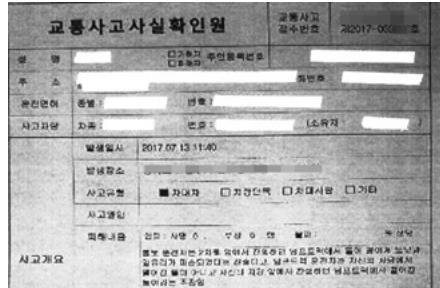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554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된 돌이 후행하던 청구차량의 전면유리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8	 <p>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피청구인 차량 적재함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청구인 차량 전면 유리 충격함</p>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3차로를 정상 주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청구차량의 전면유리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였으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진 사실은 없으므로, 본 건 사고는 피청구차량과 관련이 없는 사고임

입증 자료

• 동영상(진로변경하는 선행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물이 날아오는 모습)

• 원고차량의 손상 사진(낙하물에 의해 청구차량의 전면 유리가 손상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고 내용이 기재됨)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의 적재함에서 날아온 낙하물이 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후행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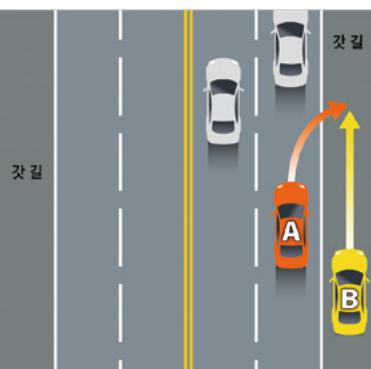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청구차량을 충격한 돌은 피청구차량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 피청구차량은 낙하물과 동일한 돌을 운반하고 있었고, 돌의 운동 궤적상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 있었던 돌이 낙하하면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함
- 도표 508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낙하물을 떨어뜨린 선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후행하던 청구차량을 손상시킨 사고이므로, 도표 50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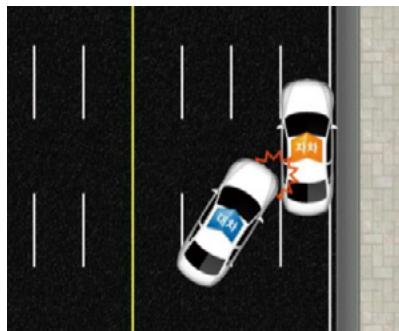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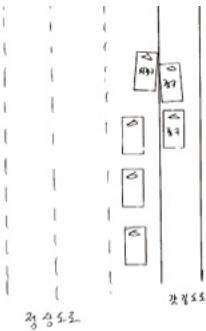
차대차 갓길 진로 변경 사고

갓길 진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511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3567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갓길을 직진하던 중 갓길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11	 <p>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하여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4차로를 주행 중 3차로의 피청구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무리한 진로변경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선행차량으로 갓길로 진로 변경하려는 순간 갓길에서 주행 중인 청구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위해 갓길로 진입하려는 순간 갓길에서 주행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갓길을 주행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3차로에서 갓길로 진로 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갓길로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 등의 갓길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갓길에서 직진 중 갓길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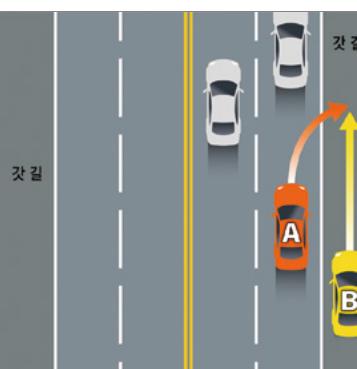
결정 이유

- 갓길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접촉사고로, 청구차량이 갓길로 주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11은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은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직진중인 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주행 중임을 고려하여 갓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갓길에서 직진 중 3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1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갓길 진로 변경 사고

갓길 진로 변경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고속도로	갓길로 진로변경	갓길 직진	참고기준 51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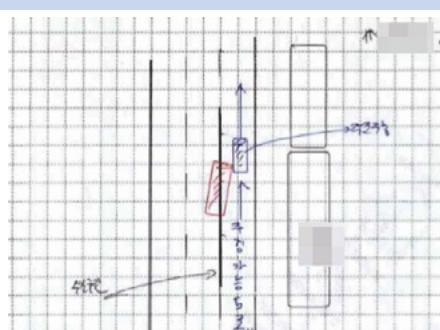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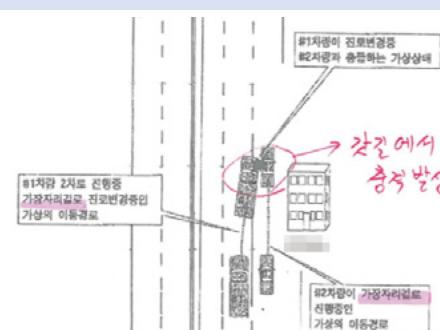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38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갓길을 주행하던 청구차량과 2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11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하여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 한다.

기본비율 A : B = 60 : 4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청구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갓길로 진로변경 중 갓길에서 주행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 장소는 갓길로, 차량의 주행이 불가한 곳이고, 피청구차량이 갓길로 진로변경 중 갓길을 주행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된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과실은 동일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사고 발생 전 갓길을 주행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근접거리에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기재됨 사고현장 사진 	

주요 쟁점

- 고속도로 등의 갓길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갓길에서 직진 중 2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갓길을 주행하던 청구차량과 2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청구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의할 때 청구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한 갓길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청구차량도 주행이 불가능한 갓길로 무리하게 진로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511은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은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직진중인 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주행 중임을 고려하여 갓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갓길을 주행 중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1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